

「벌목작업 재해예방 설비 등」 보조금 신청 안내문

❖ 개요

○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임업 현장의 사망재해를 예방하고자 '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' 사업을 통해 벌목작업 재해예방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 바랍니다.

❖ 지원대상 :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주

❖ 지원금액 : 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(최대 3,000만원 한도)

❖ 지원품목 및 지급조건

1 벌목작업 전용 보호구 2중(산림작업용 안전모, 톱날베임방지 바지) 및 장비(브레이킹바)

구분	산림작업용 안전모	톱날베임방지 바지	브레이킹바
지원기준	■ 안전모(산림청 품질인증)에 귀덮개(KCS인증) 및 보안면이 장착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세트로 구성되어 지원	■ 산림청 품질인증 제품	■ 소형, 중형, 대형으로 규격별(길이기준)로 지원 - 소형(50cm 이하): 77,000원 - 중형(51~129cm이하): 93,000원 - 대형(130cm 이상): 131,000원
기준가격	■ 최대 45천원	■ 최대 108천원	
지원수량	■ 산재보험에 가입한 종사 근로자 수 이내 지급		

2 임업장비 대여료 3중(하베스터, 쏘그래플, 우드그랩)

구분	하베스터		쏘그래플		우드그랩	
지원기준	■ 임업기기지원센터의 임업장비 대여사업에 따른 장비 및 대여료(부가세 제외)					
기준가격	규격	금액(원)	규격	금액(원)	규격	금액(원)
	0.4㎡	450,000	0.3㎡	360,000	0.3㎡	360,000
					0.6㎡	405,000
	0.8㎡	621,000	0.6㎡	396,000	0.8㎡	567,000
지원횟수	■ 연 2회 가능(※1회 4개월 이내이며 연장 요청하는 경우 1회 1개월 이내 연장 가능)					

❖ 품목별 신청 절차 및 방법(1 벌목작업 전용 보호구)



① 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: 사업주가 신속지원 신청시 필요서류<첨부1>를 구비하여 공단 일선기관으로 방문(fax) 또는 우편 제출

② 재정 컨설팅 : 공단 재정사업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'재정지원 확인서'를 신청자에게 발급

③ **시설개선 및 비용신청** : '재정지원 확인서'의 확인결과 신속지원 신청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4개월 이내 투자완료 요청

- 투자완료 요청시 필요서류<첨부1>를 구비하여 오프라인(방문 또는 우편)을 통한 보조금 지급 요청

④ **개선완료 확인** :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개선완료 현장 확인 및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 지급

❖ 품목별 신청방법(2 임업장비 대여료)



<1단계> 사업주가 임기센터의 ① 임업기계장비 대여 상담 및 신청(※접수확인증 발급) 후 공단의 ① 신속지원 신청서<첨부1>를 작성하여 공단 일선기관으로 방문(fax) 또는 우편 제출

<2단계> 공단의 ② 재정 컨설팅 : 공단 재정사업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'재정지원 확인서'를 신청자에게 송부 ※ 공단에서 장비 대여기간 중 현장방문 할 수 있음

<3단계> 임기센터의 ⑤ 기계장비 사용 및 반납 후 공단의 ③ 시설개선 및 비용신청 : '재정지원 확인서'의 확인결과 신속지원 신청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4개월 이내* 투자완료 요청

* 대여 장비 사용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도 ④ 기계장비 대여일로 부터 4개월 이내 투자완료 요청을 하여야 함

- 투자완료 요청시 필요서류<첨부1>를 구비하여 오프라인(방문, 우편 등)을 통한 보조금 지급 요청

<4단계> 공단의 ④ 개선완료 확인 :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개선완료 현장 확인 및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후 ⑤보조금 지급

❖ 안내사항

○ 보조금 지급대상, 지급절차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」 공고문*에 따름

*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 참조

○ 부정수급 예방 안내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(최대 5배)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(부정청구등의 죄)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